

#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6년 3월)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마련
-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현장 밀착 지원
- 올해 상반기는 체계 구축에 집중, 2027년까지 단계적 안착 추진
- 【관련 국정과제】 101-5.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12일(목),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 대한 “지원 방식의 변화” >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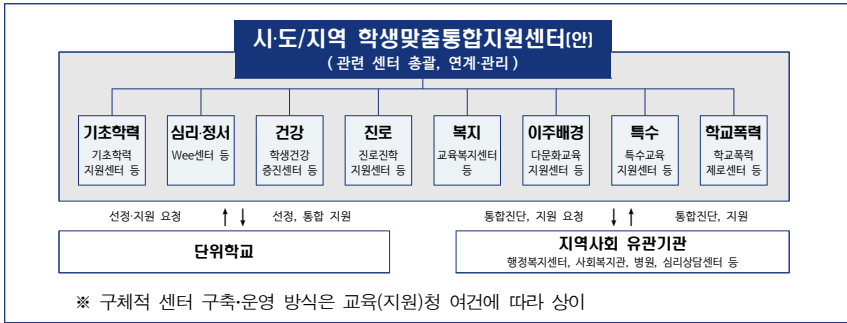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장학생 선정추천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 통합·활용 권장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하여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내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하여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③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학생 지원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여,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 학생맞춤통합지원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

|         | 도입기('26.상)             | 확산기('26.하)     | 안착기('27~)               |
|---------|------------------------|----------------|-------------------------|
| 학교      |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 ·지원의 다양화·내실화   | ·소통·협력하는 문화 정착          |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학교·학생 지원체계 구축 | ·지역 협력자원 발굴·확대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완성 |

※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등 기존 운영 경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과제를 탄력적 적용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에 배포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다.”라고 말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3.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사례
  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별첨】**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안)」

|       |                  |     |  |
|-------|------------------|-----|--|
| 담당 부서 | 학생지원국<br>학생지원총괄과 | 책임자 | 과장 나현주 (044-203-6521)                              |
|       |                  | 담당자 | 사무관 박경령 (044-203-6525)<br>교육연구사 정재훈 (044-203-6536) |



**붙임1**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점**



**붙임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Q&A)**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무엇인가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Q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학생 지원사업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위(Wee) 프로젝트, 이주배경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교육급여 등

☞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Q4.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 개별 구성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 또, 동일한 학생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학생 지원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6.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진로·상담·건강·복지 등 교내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조정·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보충학습과 함께 위클래스 상담,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 학교의 1차적 지원에도 학생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그동안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연계해 오던 지역자원과 기관이 있다면 활용하여 지원 가능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 구축한 협력망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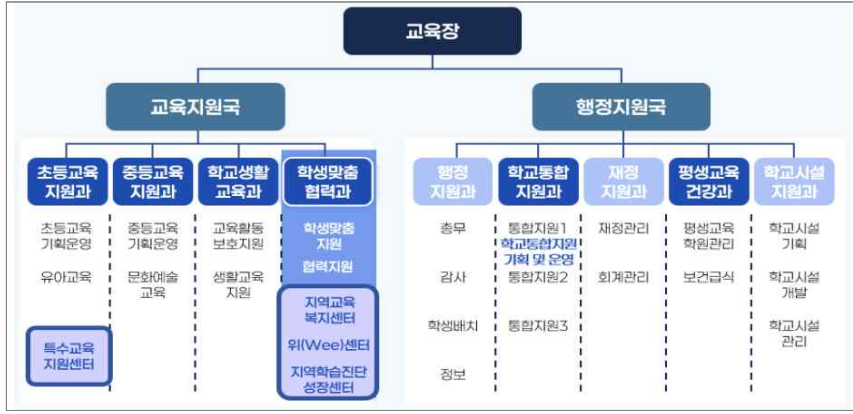
**붙임3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

□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 사례(24.1월~25.7월)**

○ **(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이주배경, 교육복지 등 담당, 기초학력보장, 학교폭력, 진로교육, 특수교육 등 유관부서 협력 추진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교육복지센터, 위(Wee)센터,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두고, 유관센터와 협력 강화

< 교육지원청 조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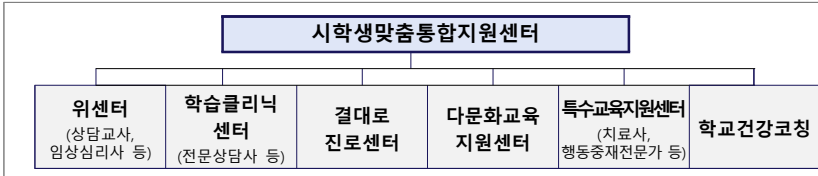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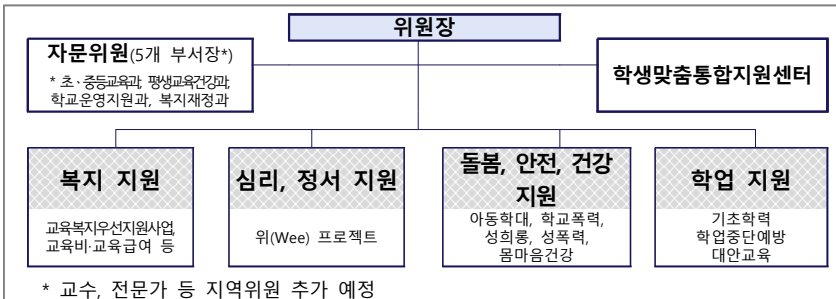


□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사례

- (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26.2월), 유관부서와 협력 강화 → 5개 학생지원 유관센터 센터 공간까지 통합 예정('26.6월)
- (예산 통합)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학생지원사업\* 일괄 배부
  - \*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비, 기초학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상담운영비
- (위원회 통합) 본청 학생지원 관련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일원화
  - \* 교육복지협의회,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위기학생지원위원회,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26.2월) 및 위원회('26.3월~) 구성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



< 교육지원청 5단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절차 >



붙임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목적                  | • 학생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함   | 제1조                       |
| 정의                  | •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지원   | 제2조                       |
|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지원체계 구축 |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br>※ 지원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체계 구축, 시책 수립, 기관 간 업무조정 등을 심의<br>•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br>※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유관 센터·조직 총괄 관리 및 연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지원<br>• 시도별 조례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능                                       | 제5조<br>제6조<br>제8조<br>제15조 |
| 교육부 내 지원체계 구축       |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br>※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지원, 정책 수립 지원<br>•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제7조<br>제9조                |
| 지원대상학생 선정           | • 지원대상학생 선정<br>- (학생·보호자·교직원)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br>- (학교장) 지원대상학생 선정, 필요시 교육감(장)에게 선정 요청 가능<br>※ 필요한 경우 학교 내 교육복지·상담지원·기초학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br>- (교육감(장)) 학교장 요청 시 지원대상학생 선정<br>• 학교장, 교육장(감)의 학생별 지원·관리<br>※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가능 | 제10조<br>~<br>제13조         |
| 연수                  | •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시  | 제14조                      |
| 정보시스템 구축            |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가능<br>- 학생지원이력 등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  | 제17조                      |